

##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관련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

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, 가입자 별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신고(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) 자료를 일괄 입수하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으며, 결정된 내용은 전체 사업장으로 통지·안내하는 등 간편한 업무 절차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, 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“급여총액, 근로기간” 항목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연계 방법 등을 아래 사례로 안내하오니,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# 1.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주요 내용

◆ 기준소득월액 결정 산정식 = 2024년 귀속 소득총액 ÷ 2024년 총 근무일수 × 30 (천원 미만 절사)

㉠ 소득총액 =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주(현)사업장의 ⑯번 항목 소득 계 + 일부 비과세 소득\*

\* 국민연금 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소득 [주식매수선택권, 우리사주조합인출금,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(월 300만원 이내) 등]

㉡ 총 근무일수 =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주(현)사업장의 ㉠번 항목 근무기간

㉢ 정기결정 적용기간 =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



### 2. 2024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연계 예시

Q. '24.2.28. “나라기업”을 퇴사하여, '24.3.1. “우리기업”에 입사한 근로자 “김국민”의 기준소득월액은?

| 연말정산 신고내역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역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24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국민연금 신고          |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 연계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근무처별소득명세             | 구 분      | 주(현)                    | 종(전)                   | 종(전) | 납세조합 | 합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⑨근무처명    | 우리기업                    | 나라기업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① 소득총액      | ⑯번 계<br>20,00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⑩사업자등록번호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② 총 근무일수    | ⑪번 근무기간<br>306 일 = 2024.3.1. 부터 12.31.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⑪근무기간    | 2024.3.1. ~ 2024.12.31. | 2024.1.1. ~ 2024.2.28.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| 1,960,000<br>= 20,000,000 ÷ 306일 × 30<br>(단, 천원미만 절사) |
|                      | ⑫~⑮      | ~ ~                     | ~ ~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⑯ 계      | 20,000,000              | 3,600,000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23,600,000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◆ 착오신고 사례

① 주(현) 근무기간 착오 기재

주(현) 우리기업의 “⑪ 근무기간” 항목에 퇴사한 “나라기업”과 합산하여 “2024.1.1. ~ 2024.12.31.”로 착오 신고

☞ 정확한 근무기간 신고는 “2024.3.1. ~ 2024.12.31.”입니다.

② 주(현) 소득금액 계 착오 기재

주(현) 우리기업의 “⑯번 계” 항목에 총소득을 퇴사한 “나라기업”과 합산하여 “23,600,000” 소득금액 착오 신고

☞ 정확한 소득금액 계 신고는 “20,000,000”입니다.

❗ 위의 착오신고 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“1,960,000”이 “1,939,000”으로 하향되어 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.

☞ 착오 결정 예시 1,939,000 = 23,600,000 (소득합산) ÷ 366 (일수 합산) × 30 (단, 천원 미만 절사)



### 3. 착오신고 주요 사례 (꼭 읽어보세요!!)

#### 1. 연도 중에 중간 입사한 근로자의 “근무기간”을 “2024.1.1. ~ 12.31.(366일)”로 착오 신고

◆ 예시 : 2024.7.1. 입사하고(총근무일수 184일), 급여총액이 1천만원인 근로자

▶ 정확한 기준소득월액 : 1,630,000원 ( $10,000,000 \div 184\text{일} \times 30$ )

▶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: 821,000원 ( $10,000,000 \div 366\text{일} \times 30$ )으로 하향됨

#### 2. 2024년 12월 급여를 2025년 1월에 실제 지급하여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(현) 사업장의 “⑩번째 급여총액”란에 12월분을 포함하지 않고 착오 신고

◆ 예시 : 2024.11.1. 입사하고, 11월분 급여 100만원은 12월에 지급, 12월분 급여 100만원은 25년 1월에 지급

▶ 정확한 기준소득월액 : 983,000원 ( $2,000,000\text{원} \div 61\text{일} \times 30$ )

▶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: 491,000원 ( $1,000,000\text{원} \div 61\text{일} \times 30$ )

※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: 근로소득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(12월분 급여의 실제 지급시기가 25년도 1월인 경우에도, 해당 급여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)

#### 3. 동일 사업장에 퇴사한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급여총액을 합산하여 착오 신고

◆ 예시 : 동일한 사업장을 2024.4.30. 퇴사(급여총액: 400만원) 후 2024.9.1. 재입사한 근로자(급여총액: 500만원)

| 신고내용          | 정확한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착오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근무기간          | 주(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(전)       | 주(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(전) |
| (⑩번 근무기간 항목)  | 9.1.~12.31.(122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1.~4.30. | 1.1.~12.31.(366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기재  |
| 소득총액(⑩번 계 항목) | 5,000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,000,000  | 9,000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기재  |
| 기준소득월액        | 1,229,000<br>( $5,000,000 \div 122 \times 30$ ) |            | 739,000<br>( $9,000,000 \div 366 \times 30$ ) |      |

#### 4. 2024년도 중 휴직기간이 있는 가입자는 소득총액 신고기간(5월)에 반드시 정정 신고 필요

◆ 예시 : 2024년 총 지급액 3,000만원, 8월 ~ 9월 2개월간 휴직(휴직기간 중 일부 소득 발생 : 100만원)

▶ 정확한 기준소득월액 : 2,861,000원 ( $29,000,000\text{원} \div 304\text{일} \times 30$ )

▶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: 2,465,000원 ( $30,000,000\text{원} \div 366\text{일} \times 30$ )

※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은 정상 근로기간과 그 급여로 결정되므로, 휴직일수와 동 기간에 발생한 휴직 급여는 제외하여 결정됨. 따라서 휴직자는 반드시 소득총액 신고기간(5월경 안내)에 과세총액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재확인하여 정정 신고해야 함



### 4.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업무 추진 일정

①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하여 신고대상 선별 : 4월 초경

②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소득자료 없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소득총액신고서 제출 : 5월 말경

③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대상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내용 조회서비스 실시(공단 홈페이지, EDI 조회) : 6월 초경

⇒ 사업장은 과세소득에 맞게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었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만 정정신고

④ 2025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사업장 발송 : 6월 중순경

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및 국민연금 관할지사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

국민연금공단 [www.nps.or.kr](http://www.nps.or.kr) 국번없이 “☎ 1355(유료)” (고객센터)